

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

성 북 구
(복지정책과)

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의안 번호	38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9.
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고령화 시대 지역 어르신들의 낙상예방을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제고하고자 성북마을관리소를 설치함에 따라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북마을관리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: 성북마을관리소

- 위 치 : 성북구 정릉로38라길 32(정릉동)
- 규 모 : 지상1층(연면적 36㎡) 모든 시설물과 장비

나. 위탁기간 : 2022. 01. 01. ~ 2022. 12. 31.(1년)

다. 위탁사무 : 성북마을관리소 관리·운영

- 어르신 낙상예방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제공
- 집수리 전동공구 및 수공구 무료 대여
-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
- 주택관리 및 수선을 위한 주민대상 기술교육

라. 수탁자 선정방법 : 모집공고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 법인 적격 심사 후 선정
(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득점자 선정)

3. 관련근거

가.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1.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자활·취업·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문화·예술·영상·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4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사회적기업, 공정무역,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청소, 경비, 교통,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